

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검 토 보 고 서

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 
「서울신용보증재단」 출연 동의안  
(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 
전문위원

#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용자지원을 위한 「서울신용보증재단」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66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## 2. 제안이유

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‘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용자 지원사업’ 추진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<sup>1)</sup>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출연기관 : 서울신용보증재단
- 나. 출연내용 : 관내 소기업·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  
※ 시중은행 협력으로 출연예산(17억→4억) 절감 효과
- 다. 출 연 금 : 400,000천원(구 출연분)

---

1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 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 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라. 필 요 성

- 1) 경기침체(고물가, 고금리)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유통 및 경영위기 극복 지원
- 2) 저신용 및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·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지원으로 정책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금천구 출연 현황

- 1) 1차 출연 : 2009. 4. 8. (5억원, 보증한도 50억원)
- 2) 2차 출연 : 2013. 7. 1. (1억원, 보증한도 10억원)
- 3) 3차 출연 : 2020. 6. 23. ~ 12. 24. (40억원, 보증한도 560억원)

① 24억, 보증한도 360억원, 2020. 6월 ~ 2023. 11월

※ 「금천형 특별신용보증대출」 보증한도 360억원에 행안부 추가보증 배당액 60억원 추가하여 총 420억원 보증규모로 운영

연 도	2020	2021	2022	2023	누 계
대출건수	633	583	312	255	<b>1,783</b>
대출규모(백만원)	14,674	13,378	7,685	5,999	<b>41,736</b>

② 16억, 보증한도 200억원, 2021년 한시적 사업

※ 「금천형 특별신용보증대출」 출연금 40억 중 16억원을 변경하여 서울시 소상공인 4무 무이자융자 사업 시-구 공동 출연금으로 사용)

대출은행	신한	하나	우리	총 계
대출건수	346	251	399	<b>996</b>
대출규모(백만원)	6,904	4,977	7,900	<b>19,781</b>

## 나. 금천형 소상공인<sup>2)</sup>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개요

- 1) 보증규모 : 212.5억원(출연금 17억×12.5배<sup>3)</sup>)
- 2) 출연규모 : 17억원(금천구-은행연계 출연)  
※ 금천구(4억) + 우리은행(10억) + 하나은행(3억)
- 3) 보증대상 : 관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기업·소상공인
- 4)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- 5) 대출조건 :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(변동금리)
- 6) 구 특별보증 혜택 : 대출금리 무이자(최초 1년 한시적 지원)

## 5. 관계법령

가.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

나.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

다.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

## 6. 검토의견

-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3고 현상(고환율·고금리·고물가)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영업악화가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추가 보증공급을 위한 보증 및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

2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,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을 갖춘 자

3) 운용배수 : 지자체 출연금 대비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준 금액의 비율로 2013년 신규 협약부터 12.5배 (법정운용배수 15배를 초과할 수 없고 운용배수가 너무 높으면 보증 부실 발생 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)

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구의회에 얻으려는 것임.

- 출연은 해당 대상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,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, 예산액은 추후 의회의 심의를 통해 별도의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, 본 동의안은 출연 동의 여부만 결정하는 사항으로,
-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2. 자치구별 출연 현황 1부.

3.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관 현황 1부. 끝.

## 지방재정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91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**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 7. 16.>

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##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[시행 2022. 1. 28.] [법률 제18358호, 2021. 7. 27., 타법개정]

**제7조(기본재산)**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3. 기업의 출연금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·도에 보조할 수 있다.

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, 시·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, 출연의 방법 및 시기,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4. 14.]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4. 19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32호, 2023. 4. 19.,  
일부개정]

### 제6조(특별보증지원)

-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특별보증지원의 자격요건, 선정절차,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**붙임 2**

**자치구별 출연 현황 (2020년 ~ 2024년 6월)**

(단위 : 억원)

구	분	2020	2021	2022	2023	2024. 6.	합계
1	강 남 구	6	26	30	30	-	92
2	강 동 구	12	20	20	-	-	52
3	강 북 구	-	10	-	-	-	10
4	강 서 구	2	9	1	-	-	12
5	관 약 구	3	9	3	5	-	20
6	광 진 구	32.5	16	30	10	1	89.5
7	구 로 구	-	10.5	-	2	-	12.5
8	금 천 구	40	-	-	-	-	40
9	노 원 구	13	12	2.5	5	3	35.5
10	도 봉 구	-	11.5	2	0.5	0.5	14.5
11	동 대 문 구	5	8	5	5	-	23
12	동 작 구	-	12	8	6	2	28
13	마 포 구	-	16	-	10	10	36
14	서 대 문 구	-	15	4	7	-	26
15	서 초 구	10	29	20	20	10	89
16	성 동 구	4	9	3	1	-	17
17	성 북 구	-	8.5	7.5	-	1	17
18	송 파 구	4	10	5	2	1	22
19	양 천 구	5	10	-	-	1	16
20	영 등 포 구	-	18	-	-	3	21
21	용 산 구	-	22	-	5	-	27
22	은 평 구	5	21	3	1.5	-	30.5
23	종 로 구	-	10	2	-	2	14
24	중 구	-	9	-	3	1	13
25	중 량 구	5	9	4	-	-	18

**□ 기관개요**

- 설립근거 :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기관설립 : 1999. 6월
- 조직현황 : 2부문 2실 6부 3센터 / 4지역본부 25지점 6센터
- 인력현황 : 정원 488명 / 현원 478명 ('24.4.30 기준)

구 분	정 원 內					정 원 外			합 계
	소 계	임 원	일반직	전문직	지원직	소 계	무 기	기간제	
현 원(명)	478	3	411	27	37	145	-	145	625

**○ 주요기능**

- 신용보증 : 서울 소재 소기업·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해 보증 (신용보증 지원한도 : 기본재산의 15배)
- 구상권 관리 : 신용보증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권의 관리 및 회수
- 경영지도 : 서울 소재 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경영에 필요한 창업 및 경영 개선 컨설팅, 현장지도, 다양한 정보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: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(경영안전, 시설)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심사를 통한 장기저리의 서울시 자금 지원

**□ '24년 예산 : 506,400백만원**

- 사업예산(인건비, 재보증료, 예비비 등) : 128,989백만원
- 자본예산(대위변제금, 투자자산 등) : 350,152백만원
- 수탁·대행사업예산(종합지원사업 등) : 27,259백만원

## □ 주요사업

### ○ 신용보증(채무보증) 지원

- 이용대상 :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·소상공인(개인 및 법인사업자)
- 보증종류
  - (채무종류) 대출보증, 이행보증, 전자상거래보증 등
  - (지원성격) 일반보증, 정책보증(사회적 취약계층, 일자리창출, 창업 등)
- 보증비율 : 대출금액의 80% ~ 100%
- 보증료율 : 보증금액의 연 0.5~2.0%(기준보증료율 : 연 1.0%)
  - ※ ① 신용도, 보증금액, 보증기간 및 보증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
  - ② 서울형 사전채무조정 지원정책으로 보증료 전액지원 상품 한시적 공급 中
- 지원한도 : 같은 기업당 최대 8억원 이내
- 지원실적 : '99년 설립이후 '24. 4월까지 총 1,526,042건, 38조 1,121억원

### ○ 구상권 관리

- 신용보증 지원업체가 부실 발생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 추진
- 추진절차 : 차기년도 구상권 관리계획 수립(서울시, 중기부 사전협의) ⇒ 이사회 의결 ⇒ 서울시 및 정부 사업계획 제출 ⇒ 연중 구상권 관리 지속

### ○ 기본재산 관리

- 매년 출연금 조성계획을 수립, 이에 따라 각 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보증지원기반 마련
- 출연금 조성방법

서울시	서울시 예산 편성 및 집행 (연도별)
금융회사 등	법정출연 : 중소기업대출금잔액의 0.4/1,000 출연
	특별협약출연 : 특정금융회사와 특별보증협약 체결을 통한 출연 등
정부	정부차원 특례보증 공급 시 출연 (햇살론 등)
자치구	자치구와 특별보증지원 협약 체결을 통한 출연